

2021년 소상공인 경영교육(전문기술) 교육생 모집 공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지속성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및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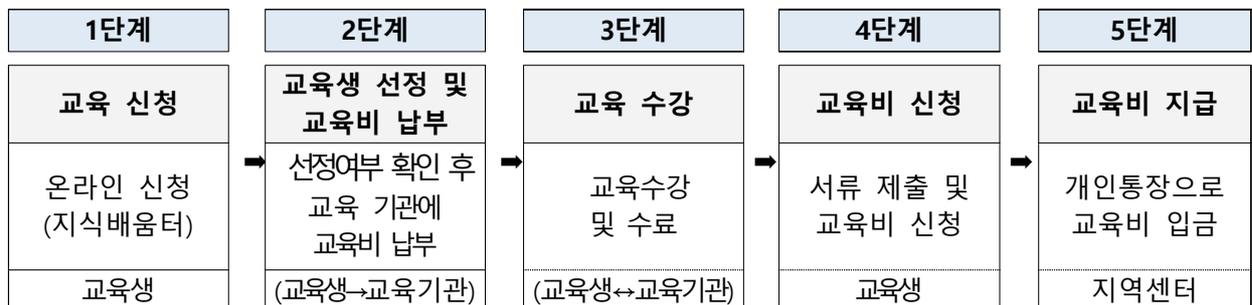
I 모집개요

□ 소상공인 경영교육(전문기술) 사업 소개

- (사업목적) 업종공통 및 업종별 특화기술 교육과정을 보유한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맞춤형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업종공통 :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교육
 - 업종특화 : 소상공인·예비창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특화된 기술전수 교육

□ 지원 기간 및 절차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예산) 7,639백만 원(총 15,278명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연 최대 2회 교육비 지원, 회당 학원비의 최대 90%(50만원 한도)
- (지원절차)



II

교육생 모집 및 선정

□ 신청자격

- (소상공인) 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대표자)
- (예비창업자) 교육 최초 수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창업 예정자

□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교육 신청일 기준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고유번호증 소지자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붙임5]
- 업종 및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지원받은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edu.sbiz.or.kr>)
- 제출서류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건에 한함)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교육활용계획서, 서약서[붙임3, 4]

□ 선정방법 : 지식배움터를 통해 선정 통보 (*교육신청 후 선정여부 확인 필수)

□ 교육 일정

개강	★교육신청 기간	교육생 선정	교육 시작일	교육종료일
6월	6.7.(월),10:00 ~6.15.(화),17:00	~6.18.(금),17:00	6.21.(월)~6.30.(수)	~ 9.30.(목) 이내
7월	6.15.(화),10:00 ~6.23.(수),17:00	~6.28.(월),17:00	7.1.(목)~7.31.(토)	
8월	7.15.(목),10:00 ~7.23.(금),17:00	~7.28.(금),17:00	8.1.(일)~8.31.(화)	
9월	8.16.(월),10:00 ~8.24.(화),17:00	~8.27.(금),17:00	9.1.(수)~9.29.(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코로나 유행 경과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III

교육비 신청

교육비 신청자격

- (소상공인)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최초 교육 수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창업한 자

교육비 신청제한

- 해당 교육과정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당해 연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동일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 신청기간

- (소상공인) 교육 수료일로부터 ~ '21. 11. 30.
- (예비창업자) 창업일로부터 ~ '21. 11. 30.

교육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edu.sbiz.or.kr/>)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로그인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교육비 신청 제출서류 등록 및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① 교육비 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③ 교육수료증	-
	④ 학원비 납입 영수증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⑤ 통장사본	본인 외 불가
	⑥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만 해당

IV

유의사항

□ 유의사항(필수숙지)

○ 교육 신청 및 교육생 선정

- 교육생은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소상공인 경영교육에서 운영하는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

* 중복 시 교육비 지원 불가,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교육 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교육과정 신청 시 세부 교육 일정 참고 필수

* 교육과정 2개 이상 신청 시 세부 교육 일정이 겹칠 경우 1개 과정 미수로 처리

- 온라인을 통해 교육기관의 등록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일정, 강사, 교육내용 등) 필히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후 교육생 선정 여부 필수 확인

- 교육생 선정 마감 후 최종 선정 교육생이 3명 미만인 경우 폐강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의 개강여부 필수 확인

○ 교육 수강

- 대표자 본인 외 가족, 종업원 대리 수강 불가

-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해야 교육 수료인정

- 이·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생 인정 범위 [붙임6]을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면허 범위 외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음

- 출결관리가 전자출결로 이루어지므로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보유 필요

- 전자출결 시 출석·퇴석의 미처리에 대해서는 교육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출결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교육비 납부 및 환급

- 교육생 선정 이전 교육비 결제 불가
- 교육비는 교육생 선정 이후부터 교육 시작일까지 반드시 결제
- 본인 의사로 교육을 포기한 경우 '미수료'처리 되며 교육비 지원 불가
 - * 기타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붙임7] 교습비 등 반환기준 참고
-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폐업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국가보조금 현금화 방지를 위해 교육비 결제 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 사용 불가,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될 수 있음
- 교육비는 교육생 명의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계좌이체)으로 결제해야하며, 현금 및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 법인·개인 사업자 카드, 통장 등 결제 불가

○ 기타사항

- 교육 관련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교육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현장 점검,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 ▶ 1인당 연간 최대 2회 100만원 한도(1회당 교육비의 최대 90%까지 50만원 이내 지원),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초 1회 교육 수료일 기준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교육비의 최대 90%)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자부담 100%)
- ▶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실습위주) 과정에 대해 공단에서 승인한 경우만 교육비를 지원하며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필수숙지)

○ 공통사항

- 손소독제 사용 등 위생관리 철저 및 발열검사 적극 협조
- 마스크 미착용 시 수업 참여 불가
- 교육 중 발열·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콜센터(☎1339) 즉시 신고
- 수업 종료 후 즉시 귀가
- 기타 사항의 경우, 별도 공지한 '소상공인 경영교육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참고

○ 출석인정 범위

- 확진자, 접촉자, 의심자로 통보받았을 경우 해당 '격리기간'
- 검진자의 경우 '검진일'
- * 추후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57
- 지식배움터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1644-5302
- 기타 문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 연락처[붙임8]

- 붙임 1. (공통) 교육비 지급 신청서 1부.
2.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4. (예비창업자용) 예비창업자 교육활용계획서 및 서약서 각 1부.
5. (참고)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6. (참고) 이·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생 인정 범위
7. (참고) 교습비등 반환기준
8. (참고) 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9. (참고) 전문기술교육 Q&A(교육생용)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교육비신청시_교육생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 경영교육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참여신청자 정보 수집·이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안내 및 자료발송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개업년월일(설립일), 업력, 업태(종목), 연락처, 주소(주택, 사업장), 이메일, Fax, 생년월일, 자격증현황, 교육이수실적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교육비 지급 및 연계기관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교육·용역수행 위탁기관,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의 교육관리 위탁, 외부 위탁용역 추진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등 기업기본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 참여제한 및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 제공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예비창업자 교육활용계획서

※ 서술식으로 자유롭게 작성(예비창업자만 작성)

창업 계획	(예시) - 창업시기, 창업아이템, 구체적인 창업방법 등
교육 신청 사유	(예시) - 교육의 필요성 등
교육 활용 계획	(예시) - 본인의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설명
기타 사항	(예시) - 창업자로서의 각오와 열정

* 교육활용 계획서는 제출양식은 제시된 규격(분량은 자유) 안에서 작성바람

[붙임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과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6] 이·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생 인정 범위

[이·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생 인정 범위]

※ 이·미용 교육과정 개설 및 강사 운영, 교육생 모집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에서 정한 자격·면허별 업무 범위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구 분		자격종목	범 위	비 고
이용 학과 졸업· 이수자 및 이용사 국가기술자격자		이용사	-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미용 학과 졸업·이수자		미용사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 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 피부미용(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국 가 기 술 자 격 자	미용기능사 미용기능장	미용사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 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 피부미용(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07.12.31이전 자격 취득자
	미용기능사 (일반)	미용사 (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 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08.1.1~'15.4.16 자격 취득자
	미용기능사 (일반)	미용사 (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 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15.4.17~'16.5.31 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 (일반)	미용사 (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 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16.6.1 이후 자격취득자
<p>* 위 자격종목별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반영구 화장, 두피주사 등 현행 법령 상 의료인의 시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용 교육과정으로 개설할 수 없음</p> <p>** 강사의 경우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해 운영 가능하며, 현장점검 적발 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p> <p>*** 교육생의 사업자등록증 업종으로 업무범위 파악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센터 담당자가 교육생의 자격·면허 등을 추가로 징구할 수 있음</p> <p>****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 근거 마련 시 인정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p>				

[붙임7] 교육비등 반환기준

[교육비등 반환기준]

※ 교육비등 반환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며, 반환사유 발생 시 5일 내에 교육비 반환을 실시하여야 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x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x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육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육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육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p>*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함</p> <p>** 교육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미수료' 처리되어 교육비 환급 불가</p> <p>*** 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p>				

[붙임8] 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 교육기관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센터 문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 전화폭주로 지역센터와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 이용 권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04157)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강원도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03150)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05039)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7 (02)839-8730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0664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0115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25475)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24826)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48931)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48931)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46548)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48255)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44689)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51523)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합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53016)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50623)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41931)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41931)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41593)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42760)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36700)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39253)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37783)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38138)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36099)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봉화군,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61925)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광역시,전라도,제주도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61925)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62243)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61170)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강진군,영암군,장흥군,신안군,완도군,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58011)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59631)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58217)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54969)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54620)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56160)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55762)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54027)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031)204-3014	(16705)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도,인천광역시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기 인천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16705)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17894)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18455)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14248)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1359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11674)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1461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1041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14066)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15357)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12919)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22227)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21360)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 충청 지역본부	(042)864-1609	(34903)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34111)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34903)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양생명빌딩 1층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30151)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32546)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32974)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31982)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1동 3층	서산시,태안시,당진시,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28388)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27339)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27184)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 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29040)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전문기술교육 Q&A

[교육생용]

I . 교육생 신청	1
II . 교육 수강 및 수료	5
III . 교육비 지원	6
IV . 기 타	7

I. 교육생 신청

Q1. 전문기술교육에 전통시장 상인도 신청·수강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면 가능

Q2. 교육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 대표가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강사, 직원 등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 임의 교육과정 개설 후 교육비 편취 등 보조금 부정 수령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수립한 교육과정의 해당 기관 대표자의 교육수강 제한

Q3.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전문기술교육으로 등록하고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Q4.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 대표자 각각 소상공인 포털 회원가입 후 전문기술교육 신청 가능

Q5. 전문기술교육은 총 2회 신청할 수 있는데 반드시 1개 과정 수료 후에 2회차 교육을 신청해야하나요?

A.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 일정이 겹치지 않을 경우 2개 과정 동시 신청 가능

Q6. 미성년자가 전문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최초 교육 수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면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Q7. 전문기술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업종이 있나요?

A.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참여 불가
 - * 교육생 모집공고 내 [붙임5]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Q8. 고유번호증 소지자가 전문기술교육을 신청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 전문기술교육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이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해석
- ☞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으로 해당 서류로는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불가능(고유번호증 보유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 제외)

Q9. 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대표가 타 교육기관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만 가능하며, 업종관련 교육 수강만 가능합니다.

Q10. 전문기술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업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 기준을 준합니다.

-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의 항목명이 서류상(사업자등록증) 확인이 되어야

하며 기타 실제 운영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통계청, 제10차) : <https://kssc.kostat.go.kr:8443>

< 검색을 통한 분류코드 확인 >



< KSIC 연계표를 통한 분류코드 항목 확인 >

KSIC-10		연계	세 부 설 명
코드	항 목 명		
56142	이동 음식점업	1	이동식 커피 판매점 제외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류점업	2	커피 전문점 제외, 이동식 커피 판매점 포함
56191	제과점업	1	아이스크림 전문점 제외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2	아이스크림 전문점 포함, 포장 판매 위주 기타 간이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	
56193	치킨 전문점	1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2	한식 일반 음식점업 세분, 만두류 등 전문점 포함
56112	한식 면요리 전문점	2	한식 면요리 전문점 세분, 면류 전문점 등 포함
56113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2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세분, 꼬치류 전문점 등 포함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2	아이스크림 전문점 포함, 포장 판매 위주 기타 간이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	포장판매 기타 간이 음식점 포함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	포장판매 기타 간이 음식점 포함

* 연계표 확인 경로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_한국표준산업분류_자료실_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연계표

< 예 시 >

- 교육과정 : 케이크 디자인 ⇨ 케이크·빵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허용
- 교육과정 : 불고기 양념 비법 전수 ⇨ 적용 가능한 모든 음식업종 허용
- 교육과정 : 요리케이터러 ⇨ 적용 가능한 모든 음식업종 허용
- 교육과정 : 3D프린터 관련 ⇨ 제조업-3D프린터를 보유하여 운영가능한 소상공인(O)
- 교육과정 : 미용 관련 ⇨ 적용 가능한 모든 미용업 허용(단, 사업에 적용·운영 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 허용)

*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필요시 증빙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Q11. 부동산 관리업, 자문 및 중개업도 교육대상에 해당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예비창업자는 교육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업,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업은 교육대상에서 제외

Q12.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외 직원이나 가족도 교육수강을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에 한해 교육 신청·수강이 가능하며, 본인 외 타인이 교육 신청·수강 시 제재조치

Q13. 교육생 선정 후 교육과정이 폐강처리 될 시 수강신청이 별도로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폐강처리 될 시, 다음 신청기간에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Q14. 전문기술교육 신청 시 e-러닝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A. 필수로 들어야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e-러닝 교육을 듣도록 권고합니다.

II. 교육 수강 및 수료

Q15.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한 경우 출석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육 미참석 시 사유불문하고 결석 처리합니다.

- ☞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도 출석 처리 불가(사유서 등은 무단결석이 아닌 증빙서류로만 활용되고 출석을 대신할 수 없음)
- ☞ 단, 코로나19 관련한 출석인정 범위는 교육생 모집공고 참고

Q16. 교육수료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해야 인정됩니다.

- ☞ 교육기관은 출석부를 통해 교육생 출석을 교육일마다 확인하고, 교육종료 후 교육정보시스템에 수료 여부 입력
- ☞ 교육정보시스템에 수료 여부 처리가 완료되어야 교육생이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신청이 가능하므로 교육종료 후 조속히 수료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Q17. 교육 수료 이후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과정을 수료한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 교육을 수료한 교육기관에서 수료증 발급 여부를 확인, 발급 가능 시 해당 교육기관 양식에 따라 확인 가능

III. 교육비 지원

Q18. 전문기술교육 수강 중 휴·폐업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자 상태가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

Q19. 전문기술교육 동일과정을 수강해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교육과정에 대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과정의 기준은 과정명 및 세부 커리큘럼으로 함

Q20. 교육과정 신청 후 폐강 또는 교육생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 지원 횟수가 차감이 되나요?

A. 교육과정 폐강 또는 교육생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21. 교육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교육생 모집 공고 [붙임6] 교습비 등 반환기준 참고

IV. 기타

Q22. 교육비 납부 후 사업자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영수증은 인정 불가능합니다.

- ☞ 교육생 명의의 핸드폰번호로 발급 또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 후 카드번호로 발급(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영수증 인정 불가)
- ☞ 법인·개인사업자 카드, 통장 등으로 결제 불가

Q23. 전문기술교육 수료 후 자금지원 대상에 해당되나요?

A. 해당됩니다.

Q24. 지식배움터 또는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1644-5302로 문의바랍니다.

Q25. 제로페이 결제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 하시면 됩니다.

Q26.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 ☞ 국가보조금 현금화 방지를 위함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또는 전부 환수 될 수 있음

Q27. 교육비는 언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하나요?

A. 교육선정일로부터 교육 시작일까지 결제 완료하셔야 합니다.

- ☞ 법인·개인사업자 카드, 통장 등으로 결제 불가
- ☞ 교육기관은 영수증 발행에 있어 관련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